

# 工業所有權審判事例

(國)(內)(事)(件)

## 商標登錄拒絕定

<大法院 第1部 判決>(1982. 12. 28)

裁判長: 大法院判事 전상석

關與法官: // 이일규 · 이성렬 · 이희창

1. 審判請求人(上告人): 쏘니株式會社

2. 被審判請求人(被上告人): 特許廳長

3. 原審決: 特許廳 1981. 7. 30字, 1980年 抗告審判(결)第1173號 審決.

4. 主文: 上告를棄却한다. 上告訴訟費用은 審判請求人の負擔으로 한다.

### 5. 理由

上告理由를 判斷한다.

商標法 第8條第1項 3號에 商標登録 恪害要件의 하나로 “그商品의 產地, 原材料, 效能, 用途, 數量, 形狀, 價格, 生產方法, 加工方法 또는 時期를 普通으로 使用하는 方法으로 表示한 標章만으로 된 商標”라고 規定하고 있는바 여기에 열거된 内容을 表示하는 標章은 이른바 記述的 標章을 말하며 商品의 特性을 記述하는 目的으로써 表示되어 있어 이러한 標章은 商品去來에 있어一般的으로 使用되는 경우가 많은 表示이므로 指定商品識別의 機能을喪失하는 경우가 허다할 뿐아니라 설사 商品識別의 機能이 있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商品去來上 누구에게나 必要한 “表示”이기에 어느 特定

人에 限하여 獨點의으로 使用시킨다는 것은 公益上으로 보아 妥當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規程을 두고 있는 것으로 解釋된다.(大法院 1979. 7. 24宣告, 78후 거判决参照).

그리고 위 規定에 商品의 形狀을 所謂 記述의 標章의 例示로 들고 있는데 이 形狀이란 것은 商品의 形體와 생긴 모양을 말하며 이 形狀의 表示는 文字, 또는 記號, 模型 혹은 그들의 結合에 의하여 記述되는 바 本願商標인 “L—830”은 去來者나 需要者間에 指定商品第39類 비데오테이프의 길이(長, Length)가 어느정도(830피트)라고 直感케 할 蓋然性이 높후하다 할 것이니 이는 指定商品의 形狀을 보통으로 表示한 標章만으로 된 商標과 할 것이므로 그 表現이多少 어색

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런 趣旨에서 한 原審決을 正當하고 거기에 訴論과 같은 法理誤解나 審理未盡 나아가 理由不備가 있다 할 수 없으니 論旨는 理由없다.

그러므로 上告를棄却하고 上告訴訟費用은 敗訴者の負擔으로 하기로 關與法官의 意見이一致되어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

### 參考

1980年 抗告審判(결)第1173號  
抗告審判請求人: 쏘니株式會社  
被抗告審判請求人: 特許廳長

1980年 商標登録出願 第2113號  
拒絕不服抗告審判請求事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審決한다.

主文: 本件 抗告審判請求는 成立할 수 없다.

## 公知部分을 包含한 意匠要部의 認定

(東京高裁 1982. 7. 28 判決, (1981行ヶ)277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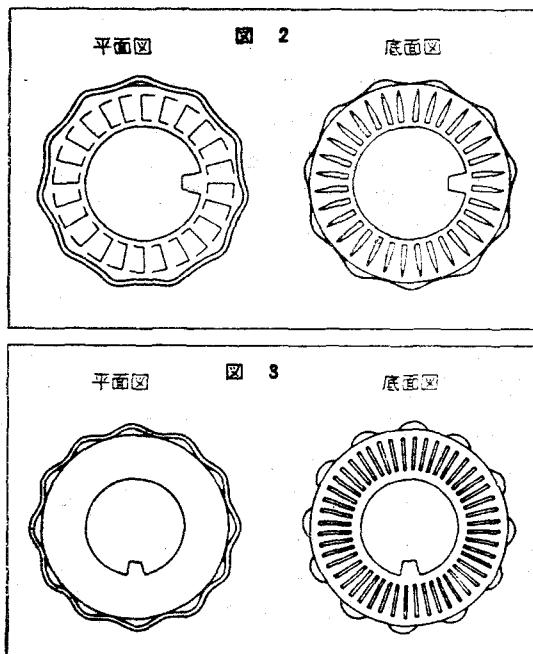
### 1. 事件概要

原告는 그림 2의 平面圖 및 底面圖를 나타낸 座金의 意匠에 관해서 意匠登録出願을 하였는바 그림 3에서 나타낸 引用意匠과 類似하다는 이유로 이것을 拒絶한다는 審決을 받아 그 取消를請求하는 出訴를 하여 審決에서 兩意匠은 쇠퇴(칼자루와 칼날사이에 끼우는 것)모양의 皿狀形態를 나타내고 裏面에 放射狀으로 配列된 얇은 오철을 갖는 點이 主要部라고 認定한 것은 그릇된 것이며 引用意匠은原告가 오랜 동안 大量으로 生產販賣한 것으로서 前記의 點은 本件出願當時 보아온 形狀이기 때문에 兩意匠의 類似與否判断에 있어서는 그 表面部分의 差異를 重視한다고 主張하였다.

### 2. 判決要旨

判決은原告가 主張한 事情과 같이 本願意匠에 있어서 前記의 點을 新規한 部分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과 本願 및 引用意匠의 基本的 構成態樣에서 그 意匠的 要部를 어느 部分으로 認定할 것인가 하는 것은 別個의 問題인 것이다. 그리하여 兩意匠의 各構成態樣에 비추어 審決認定의 部分이 主要部라고 하는 것은 明確하나 座金의 意匠에서 그 裏面의 放射狀으로 된 오철이 主要部에 屬한다고 하는 以上 그 表面에도 똑같이 滑止用(미끄럼을 막는데 쓰이는) 오철이 設置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態樣에 의하여 이것들의 하나하나가 意匠의 主要部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와같은 觀點에서 本願意匠에서는 表面의 오철配列이 보는 사람들의 美觀에 強하게 어필하는 部分을 意匠의 要部를 形成하는 것이며 따라



서 兩意匠은 이 點에서 明確히 相違하므로 이 相違點을 가지고 部分의 差異에 지나지 않는다는 審決은 틀렸다고 判示하여 審決을 取消하였다.

### 3. 論評

特許, 實用新案에서의 發明, 考案의 新規性이나 進歩性의 判断에서는 本件과 같은 事情이 있을 경우 前記의 表面部分을 發明, 考案의 構成要件으로 判断하는 것이 普通이라고 생각되나 意匠의 審理에서는 全體的 觀察이 基本으로 되어 있어 이 判決의 論旨를 進行시키는 方向이 公知部分을 包含한 意匠의 要部認定에서 하나의 手法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